

# 급여/수당 분야 법령 가이드

silmu.kr — 공무원 실무 법령 가이드

수록 토픽 12건 · 생성일 2026-06-07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관할 기관·법무담당관·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목차

1.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2. 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교육청 외 사기업·계약직 경력의 산입 금지
3. 육아휴직수당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일반 분기
4. 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5.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6. 가족수당
7. 명절 휴가비
8. 시간외근무수당
9. 성과상여금
10. 공무원 퇴직수당
11. 공무원 복지포인트
12. 연말정산

# 1.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호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100% 이내로 환산되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지급률(1년 미만 미지급, 10년 이상 50%)에 따라 매년 1·7월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단, 직전 6개월간 관내 타학교 경력이 호봉에 누락되면 정근수당이 200만원대까지 과소 지급될 수 있어 호봉경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 시행 2026.01.02 ### 제7조 지급 시기·지급 구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의무경찰·경찰대학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등(제1항 단서)이며, 일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은 본 조 적용 대상입니다. ### 제7조 신규임용·휴직·직위해제 시 비례 지급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7조 교육공무원 근무연수 산정 — 별표 2 위임 >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별표 2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제7조제1항 관련) | 근무연수 | 월지급액 (월봉급액 대비) | |---|---| | \*\*1년 미만\*\* | \*\*미지급\*\* | | 1년 이상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 2년 이상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원문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별표 2의 별도 표 — 5년 이상부터 정액)은 본 토픽 범위 외.

## 시행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위임한 \*\*교육공무원의 호봉경력 환산\*\* 기준 — 정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1. 교원 경력 (가목) —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원 포함)\*\* >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 2. 사립학교 교원 (나목) >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핵심 — 자격증 일치 여부에 따른 환산율 단계 | 구분 | 환산율 | |---|---| | 자격증 + 근무 학교 일치한 기간제 교원 | \*\*100% 이내\*\* | |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 \*\*80% 이내\*\* | |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 | \*\*50% 이내\*\*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호봉경력 산정의 세부 절차·예외 사례를 정리한 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 정근수당 산정 시 호봉경력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행정실은 본 지침의 호봉경력 환산표·증빙요건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 호봉경력 산정의 일반 원칙 - \*\*임용 직전 경력\*\*은 임용권자의 확인을 받아 호봉에 산입 - 동일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임용공문·재직증명서\*\*로 증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15일 이상 1개월 / 15일 미만 0개월\*\*로 계산 ### 호봉경력 누락 위험 구간 — 직전 6개월 기간제 교사가 같은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직전에 근무한 경우, 임용 시 호봉 입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호봉이 1호 이상 낮게 산정되면 봉급·정근수당·각종 수당이 모두 동시에 과소 지급되며, 정근수당 단독으로 200만원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권장\*\*:- 직전 학교 재직증명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발급) - NEIS 인사기록 카드 인쇄본 - 임용공문 사본

## 실무 해설

## 1. 결론 —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정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호봉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자격증·근무 학교 일치 시 \*\*100% 이내\*\*로 환산되어 정규 교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라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이며, 1년 이상부터 10%(1~2년)에서 50%(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2. 호봉경력 산정 —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경력의 함정 학교 행정실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호봉경력은 \*\*임용 직전 6개월간 같은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경력\*\*입니다. NEIS 인사기록에서 이 구간이 입력되지 않으면 호봉이 1호 이상 낮게 책정되며, 봉급·정근수당·각종 수당이 모두 동시에 과소 지급됩니다. \*\*실제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사례 (2026-04 회의자료 )\*\* :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관내 타학교 경력(직전 6개월)을 호봉 산정에서 누락하여 정근수당 약 \*\*2,000,270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봉 1호 차이만으로도 1·7월 정근수당과 매월 봉급이 동시에 과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신규 임용 기간제 교사의 NEIS 호봉경력 입력 시 \*\*임용공문·재직증명서·NEIS 인사기록 카드\*\* 3종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3. 호봉 환산율 — 100% / 80% / 50%의 분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가 정한 환산율은 다음 3단계입니다. - \*\*100% 이내\*\* — 교원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는 기간제 교원 (대부분의 일반 사례) - \*\*80% 이내\*\* —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예: 중등 자격으로 초등에서 근무 등) - \*\*50% 이내\*\* — 「사립학교법」 제54조 관할청 보고 의무 미이행 사립학교 경력 자격증과 근무 학교 일치 여부는 NEIS 인사기록 카드의 \*\*자격증 종류 코드\*\*와 \*\*근무 학교 학교급\*\*으로 자동 매칭이 가능하나, 특수학교·평생교육법 관련 학교 등 비표준 케이스는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환산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 4. 신규임용·휴직 시 일할 계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1·7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 15일 이상 → 1개월 - 15일 미만 → 0개월 기간제 교사가 학기 중 임용된 경우(예: 9월 1일자 임용, 1월 정근수당 지급), 9월~12월 4개월 근무한 것으로 산정되어 별표 2 지급률에 비례 적용됩니다. 호봉경력 1년 미만이라면 정근수당 자체가 미지급이므로, 신규 임용 첫 해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감사 지적 1순위 — 호봉경력 누락·중복 산입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정근수당 관련 지적은 두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 \*\*과소 지급\*\* — 직전 학교 경력 누락, 호봉 미산입 (회의자료 · 사례) - \*\*과다 지급\*\* — 교육청 소속이 아닌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 (회의자료 ) 특히 사기업·연구기관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인정하지 않는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면 환수 대상이 되며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합니다. 호봉 산정 근거 서류(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 교사인데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이며, 1년 이상부터 10%~50%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Q. 전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1.가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제 교원 포함)은 100% 이내 환산율로 호봉에 산입됩니다. 단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가 불일치하면 80% 이내, 사립학교 관할청 미보고 시 50% 이내로 환산됩니다.

Q. 직전 6개월간 같은 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호봉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NEIS 인사기록 카드의 호봉경력 항목과 임용공문·재직증명서를 대조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락이 확인되면 학교 행정실에 호봉 정정 요청을 하고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호봉경력 확정 의뢰를 합니다. 누락이 정정되면 정근수당 차액(과소 지급분)이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학기 중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신규 임용자는 지급대상기간(1·7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15일 이상 1개월, 15일 미만 0개월)에 비례하여 지급받습니다. 단 호봉경력 1년 미만이면 정근수당 자체가 미지급이므로, 신규 임용 첫 해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경력도 호봉에 100% 들어가나요?

A.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100%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경력은 50% 이내로 환산됩니다(별표 22 1.가 단서). 사립학교 재직 시점에 관할청 보고 여부를 시·도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du-allowance-temp-teacher-tenure>

## 2. 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교육청 외 사기업·계약직 경력의 산입 금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만 합산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하면 회의자료 처럼 1,008,2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시효 환수 대상이 됩니다. Phase A #1 (호봉 누락·과소)의 대칭 사례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 정근수당 근무연수 산정 (한정 조항) ### 교육공무원 — 별표 22 경력환산율표 적용 >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경력만 합산 (한정) >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 (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 핵심 원칙 — 공무원 또는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 경력만 | 경력 종류 | 호봉 산입 여부 | |---|---|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 합산 |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 합산 | 자격증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 100% 이내 환산 | | 사립학교 관할청 보고 교원 (별표 22 1.나) | 100% 이내 (미보고 시 50%) | | \*\*사기업·연구기관·일반 계약직 등\*\* | \*\* 산입 불가\*\* (인사혁신처장 인정 경력 한정) | | \*\*무자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 (자격 갖춘 경우만 별표 22 1.마 100% 이내)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원 경력 환산율 (자격·기관 한정) 별표 22는 정근수당·봉급 호봉 산정의 기초인 경력환산율표입니다. 한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호봉 오인정·과다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 교원 경력 (가목·나목·마목·바목) | 가.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 등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교육기관 근무) | \*\*100% 이내\*\* | |---|---| 단서: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기간제 교원 | 80% 이내 | | 단서: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 | 50% 이내 | | 나.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자격증) | 100% 이내 | | 마.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군·구청장 임면 보고) | 100% 이내 | | 바. 특수학교 교원 자격 (유치원 제외) + 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80% 이내 |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력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포함) | \*\*100%\*\* | |---|---| 가. 단서: 봉급을 받지 않은 공무원·통상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비상근 공무원 | 제외 | | | 가. 단서: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로예비역·군간부후보생 | 제외 | | 나. 고용직공무원 | 80% | ### 산입 불가 경력 (회의자료 핵심) 다음 경력은 별표 22에 명시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업 일반 직원 경력 (계약직·정규직 무관) - 연구기관 비공무원 경력 (공무원 신분 아닌 경우) -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아닌 학교 외 강사·조교 등 경력 중 자격 미충족 - 학원·과외·기타 사교육 강사 경력 - 봉급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인턴 경력 (별표 22 2. 가목 단서) ### 회의자료 사례 — 1,008,200원 과다 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한 학교가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정근수당이 1,008,200원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호봉 1호 이상 잘못 산정된 결과 매년 1·7월 정근수당 + 매월 봉급이 동시에 과다 지급되었으며, 누계 5년치가 모두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범위와 호봉 산정 세칙은 본 예규에 명시. 학교 행정실은 매년 1월 갱신 여부 확인 후 다음 사항을 점검. ### 호봉 산정 시 검증 절차 (3단) 1. \*\*법적 근거 확인\*\* — 산입 후보 경력의 「국가공무원법」 §2 또는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인지, 또는 별표 22 1.가~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2. \*\*증빙 서류 검증\*\* —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으로 자격·소속·기간 검증 3.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 모호한 케이스는 반드시 회신 받아 확정 ### 환수 절차 — §15 과 비교 | 구분 | 부정 수령 (본인 귀책) | 행정 처리 오류 (학교 행정실 귀책) | |---|---|---| 환수 범위 | \*\*5배 가산 환수\*\* (§15 , 시간외수당) | 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 | 시효 | 5년 | 5년 | | 본인 신고 의무 | 의무 | 의무 (오류 인지 시) | | 정근수당의 부정 수령 5배 가산 조항은 §7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47 에 따른 부정 수령 환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 처리 오류라도 산정 근거 서류 보존(5년)이 필수입니다. ### 증빙 보존 - 호봉 산정 결정서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첨부) - 모든 산입 경력의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 산정대장 (호봉별 환산율 명시) - 5년 이상 보존

### 실무 해설

## 1. 결론 — 공무원·자격 갖춘 교원 경력만 호봉에 산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정근수당의 기초인 호봉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사기업·연구기관·학원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잘못 산입하면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2. 회의자료 — 1,008,200원 과다 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한 학교가 신규 임용 공무원의 임용 직전 \*\*사기업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잘못 산입하여 정근수당이 약 \*\*1,008,200원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NEIS 인사기록 입력 시 사기업 경력을 별표 22 2. 가목(국가·지방공무원 경력)으로 분류한 것이 원인입니다. ### Phase A #1과의 차이 | 사례 | 방향 | 발생 원인 | 검증 절차 | |---|---|---|---| Phase A #1 (회의자료 ) | 과소 지급 | 호봉경력 \*\*누락\*\*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 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교차 | \*\*Phase A #5 (회의자료 )\*\* | \*\*과다 지급\*\* | 호봉경력 \*\*오인정\*\* (사기업·계약직 산입) | 별표 22 분류 + 시·도교육청 회신 | 두 사례는 동일한 호봉 산정 절차에서 발생하지만 방향이 반대이며, 학교 행정실은 양 방향 모두 매월 산정 시점에 검증해야 합니다. ## 3. 산입 가능 경력의 범위 학교 행정실이 호봉 산정 시 산입 가능한 경력은 다음 5가지 카테고리뿐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별표 22 2.가, 100%) - 행정·기술·연구·지도 등 일반직, 특정직(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별정직 포함 2.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별표 22 2.가, 100%) 3. \*\*「교육공무원법」 §2 교육공무원 + §32 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100% 이내) - 자격증 일치 시 100%, 불일치 시 80%, 사립 미보고 시 50% 4.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별표 22 1.나, 100% 이내) 5.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특수학교 자격자\*\* (별표 22 1.마·바, 80~100%) 이 외의 경력 — 사기업, 연구기관 비공무원, 학원 강사, 사교육, 봉사·인턴, 무자격자 — 은 모두 산입 불가입니다. ## 4. 행정 처리 오류 환수 — 단순 환수, 5년 시효 본인의 부정 신고가 아닌 학교 행정실의 처리 오류로 과다 지급된 경우라도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부정 수령이 아니므로 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과다 지급액만 단순 환수\*\*됩니다(시간외수당 §15 의 5배 가산 조항과 비교 시 차이). 5년 시효 내에 환수가 가능하므로, 학교 행정실은 호봉 산정 결정서·증빙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 신고한 경우(예: 자신의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거짓 기재)는 「국가공무원법」 §47 에 따라 5배 가산 환수 + 징계 사유가 됩니다. ## 5. 학교 행정실 예방 절차 1. \*\*신규 임용 시점에 호봉 산정 결정서 작성\*\* — 모든 산입 경력을 별표 22 항목별로 분류·기재 2. \*\*모호한 경력은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 사기업·연구기관·학원 등 비전형 경력은 반드시 회신 받기 3. \*\*NEIS 인사기록 카드의 호봉경력 항목 5년 보존\*\* +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첨부\*\* 4. \*\*매년 1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갱신 여부 확인\*\* — 인정 경력 범위 변경 가능성 5. \*\*호봉 정정 발생 시 정근수당·봉급·각종 수당 모두 동시 정정\*\* + \*\*소급 환수·소급 지급 절차\*\* 진행 호봉 1호 차이만으로도 누계 수십~수백만원 단위의 과다·과소 지급이 발생하므로, 학교 행정실의 호봉 산정은 정근수당 외 모든 보수·수당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임용 직전에 5년간 다닌 사기업 경력을 호봉에 넣을 수 있나요?

A. 넣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호봉경력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사기업 일반 계약직·정규직 경력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호봉에 들어가나요?

A.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별표 22 2. 가목(국가·지방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공기업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2 또는 「지방공무원법」 §2 적용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산입됩니다. 모호한 경우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회신 요청하세요.

Q.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로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환수당하나요?

A. 예. 본인의 부정 신고가 아닌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라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단순 환수됩니다(과다 지급액만, 5배 가산 없음).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하므로 호봉 산정 근거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Q. 본인이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잘못 기재해서 호봉이 잘못 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47 에 따른 부정 수령으로 처리되어 5배 가산 환수가 적용되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신규 임용 시 호봉 신청서에는 정확한 경력만 기재해야 하며, 모호하면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사전 회신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Phase A #1 (호봉 누락)과 본 토픽 (#5, 호봉 오인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예. 두 사례 모두 동일한 호봉 산정 절차에서 발생하므로, 학교 행정실이 신규 임용 시 (1) 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 재직증명서 3종 교차 (누락 방지) + (2) 별표 22 항목별 분류 + 모호 케이스 인사부서 회신 (오인정 방지)을 동시에 수행하면 양 방향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육아휴직수당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일반 분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은 자격에 따라 일반(1~3월 250만/4~6월 200만/7월~160만), 6+6 부모육아휴직제(1·2월 250→6월 450만), 한부모(1~3월 300만)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아닌 일반 상한을 잘못 적용하면 회의자료 처럼 8,560,8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 일반 상한 (대부분 휴직자 적용) ### 산정 비율 + 상한 + 하한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기간 | 산정 비율 | 상한액 | |---|---|---| | 1개월~3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 4개월째~6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 모든 기간 | — | 하한 \*\*70만원\*\* | ### 지급기간 (§11의3 ) — 최초 1년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8개월 연장 (§11의3 , 2025.1.3 신설) 부모 각 3개월 이상 휴직, 한부모, 인사혁신처장 인정 장애아 부모는 \*\*최초 18개월 이내\*\* 적용 (합산 18개월 한도).

#### 시행령

## §11의3 1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공무원, 두 번째 휴직자) > \*\*가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 \*\*나목\*\*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자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3.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 단계별 상한 (1~6개월)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1의3 일반 상한 | → 7개월째 이후는 일반과 동일하게 §11의3 적용 (160만원 상한, 80% 산정). ### 6+6 부모육아휴직제 vs 일반 — 6개월차 상한 200만원 차이 | 구분 | 6개월차 상한 | |---|---| | 일반 (§11의3 ) | \*\*20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1호 가목) | \*\*450만원\*\* | |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에게 일반 상한을 잘못 적용하면 6개월차에만 250만원 과소 지급, 누계로 1·2·3·4·5·6월 합산 시 \*\*수백만~천만원 단위 과다·과소 지급\*\* 발생 가능.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규칙

## §11의3 2호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 \*\*가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 \*\*나목\*\*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 vs 일반 — 1~3개월 상한 50만원 차이 | 구분 | 1~3개월 상한 | |---|---| | 일반 (§11의3 ) | \*\*250만원\*\* | | 한부모 (§11의3 2호 가목) | \*\*300만원\*\* | | → 4개월째 이후는 §11의3 적용 (4~6월 200만원, 7월~160만원). ## 자격 분기 의사결정 표 | 휴직자 상황 | 적용 호 | |---|---| | 1·2개월 상한 | 3개월 | 4월~6월 | 7월~ | |---|---|---|---|---| | 일반 (단독 휴직 또는 첫 번째 휴직자) | §11의3 | 250만 | 250만 | 200만 | 160만 | |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공무원, 두 번째) | §11의3 1호 | 250만 | 300만 | 350~450만 | 160만 |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11의3 2호 | 300만 | 300만 | 200만 | 160만 | ### 18개월 연장 적용 자격 (§11의3 ) | 케이스 | 18개월 적용 | |---|---| |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 | | 인사혁신처장 정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 | 위 외 일반 | (12개월 한도) |

#### 실무 해설

## 1. 결론 — 자격 분기에 따른 상한 차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은 자격에 따라 3가지로 다릅니다. \*\*일반\*\* (§11의3 ),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1호), \*\*한부모\*\* (§11의3 2호). 학교 행정실은 휴직 신청 접수 시 자격을 정확히 분기해야 하며,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아닌 일반 상한을 잘못 적용하면 6개월차에 단일 월 250만원 차이(450만 - 200만), 누계 수백만~천만원 단위의 과다·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회의자료 — 8,560,800원 과다 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에게 §11의3 1호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1·2월 250만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이 아닌 \*\*잘못된 더 높은 상한\*\* (또는 자격 미충족 인데 한부모 상한 등)을 적용하여 약 \*\*8,560,800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의3 에 따라 부정 수령액은 환수 대상이며, 본인 귀책이 아닌 학교 행정실의 처리

오류라도 과다 지급액은 환수해야 합니다(단, 본인의 부정 수령이 아닌 한 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 환수). 학교 행정실은 자격 분기를 매월 산정 시점에 재확인하여 환수 사태를 예방해야 합니다. ## 3.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격 3요건 §11의3 1호의 적용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 (배우자가 먼저 휴직 사용) 3. 해당 공무원 (두 번째 휴직자)이 본 규정 적용 대상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단순 조건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사용 이력\*\***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학교 행정실은 배우자 소속기관에 인사기록 회신을 받아 사용 이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 4.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증명 필수 §11의3 2호의 한부모 특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상의 한부모(이혼·별거 등)라도 법적 인정이 없으면 적용 불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휴직 신청 시 반드시 첨부받아야 합니다. ## 5. 18개월 연장 — 자격 검증 핵심 §11의3 의 18개월 연장은 다음 3가지 케이스에 한해 적용: - **\*\*부모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배우자 공무원 + 본인 둘 다 3개월+)**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아 자녀의 부/모\*\* (인사혁신처장 정한 기준 — 매년 갱신 여부 확인)** 이 외의 일반 휴직자는 §11의3 에 따라 **\*\*최대 12개월\*\***입니다. 18개월 적용 시점에 자격 검증 누락 시 13~18개월차 지급액 전액이 부정 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제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이 자동 적용되나요?

A. 자동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1호의 자격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같은 자녀에 대해 (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3)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배우자 소속기관에서 회신받아 학교 행정실이 검증해야 합니다.

Q. 일반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의 6개월차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A. 월 250만원입니다. 일반은 §11의3 4~6월 상한 2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호 가목에 따라 6개월째 450만원이 적용됩니다. 1~6개월 누계로 보면 일반 1,350만(250×3+200×3) vs 6+6 2,000만(250+250+300+350+400+450)으로 약 65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이혼해서 사실상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한부모 상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11의3 2호 한부모 상한(1~3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실상의 한부모라도 법적 인정이 없으면 일반 상한 §11의3 이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수당을 12개월이 아닌 18개월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 §11의3 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자격 미충족 시 12개월 한도이며, 13~18개월차 지급액은 부정 수령으로 환수됩니다.

Q.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로 육아휴직수당이 과다 지급되었는데 본인이 환수당하나요?

A. 예. §11의3 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며, 본인의 부정 수령이 아니더라도 단순 환수가 진행됩니다(부정 수령 5배 가산은 본인 귀책 시에만 적용). 학교 행정실은 매월 산정 시점에 자격을 재확인하여 처리 오류를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du-childcare-allowance-cap>

## 4. 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2025년 1월 3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이 삭제되며 육아휴직수당의 사후지급분(복직 후 잔여분 일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 사례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처리 누락 시 5,383,510원 단위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육아휴직수당) — 2026.01.02 현행 ### §11의3 일반 — 월봉급액 + 상한 + 하한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기간 | 산정 비율 | 상한액 | |---|---|---| | 1개월~3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 4개월째~6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 모든 기간 | — | 하한 \*\*70만원\*\* | ### §11의3 지급기간 — 최초 1년 (원칙)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1의3 18개월 적용 케이스 (2025.1.3 신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령

## §11의3 · 2025.1.3 삭제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 개정 사항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공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 향이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두 항은 종전에 육아휴직수당의 일정 비율(통상 15%)을 휴직 중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의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 종전 (2024년 이전) | 현행 (2025.1.3 이후) | |---|---| | §11의3 · 에 따라 사후지급분 보류·복직 후 일시 지급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삭제됨) | | 복직 후 6·7개월차에 분할 지급되는 잔여분 | 모든 수당이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11의3 ) | ###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 >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2025.1.1 이후 휴직 시작자: 신규 규정(사후지급분 없음, 매월 전액 지급) 적용 → 2024년 이전 휴직자(이미 사후지급분이 보류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 회의자료 사례 — 5,383,510원 미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종전 §11의3 이 적용된 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한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사례입니다. 학교 행정실이 종전 적용 대상자를 신규 규정(2025.1.1 이후) 대상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 복직월부터 6개월·7개월차의 잔여분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리 원칙\*\*: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2025년 이후 복직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 §11의3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 ### 1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 > \*\*가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 \*\*나목\*\*: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6+6 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 | |---|---|---|---|---|---|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11의3 적용 | ### 2호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 \*\*가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 \*\*나목\*\*: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부정 수령 제재 >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1의3 ).

### 실무 해설

## 1. 결론 — 사후지급분은 폐지, 그러나 경과 규정에 주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이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종전의 "사후지급분"(휴직 중 일정 비율을 보류했다가 복직 후 매월 잔여분으로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으로 정하고 있어,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2. 회의자료 — 5,383,510원 미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종전 사후지급분(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한 \*\*복직 후 6·7개월차 잔여분 매월 지급이 누락\*\*되어 약 5,383,51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2025.1.3 개정 이후 모든 휴직자에 대해 사후지급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일괄 처리한 결과, 종전 적용 대상자(경과 규정)도 함께 누락된 것이 원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휴직 발령공문의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분기해야 합니다. | 휴직 시작일 | 적용 규정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종전 §11의3 · —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 그대로 진행 | 2025년 1월 1일 이후 | 현행 §11의3 — 사후지급분 없음,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 ## 3. 현행 육아휴직수당 산정 (2025.1.1 이후 휴직자) ### 일반 (§11의3 ) - 1~6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250만원(1~3월) → 200만원(4~6월) - 7개월~: 월봉급액 80%, 상한 160만원 - 모든 기간 하한: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1호) 같은 자녀에 대해 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이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게 단계적 상한 적용: -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7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적용 ### 한부모 (§11의3 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공무원: - 1~3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300만원\*\* - 4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적용 ### 18개월 적용 케이스 (§11의3 )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4. 학교 행정실 처리 절차 휴직 신청 접수 시 다음 5단계로 처리해야 누락·과다 지급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휴직 시작일 분기\*\* — 2024년 이전(경과)/2025년 이후(현행) 2. \*\*자격 확인\*\* — 일반/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18개월 적용 3. \*\*상한·하한 산정\*\* — 매월 별도 산정대장 작성 4. \*\*에듀파인 코드 입력\*\* — 일반/6+6/한부모 코드 분리, 경과 규정 대상은 사후지급분 코드 별도 5. \*\*복직 시점 검증\*\* — 경과 규정 대상이 복직할 경우 잔여분 매월 지급 자동 처리 여부 확인 ## 5. 부정 수령 환수 §11의3 에 따라 부정 수령 시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하므로 산정 근거 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025년 9월에 복직했는데 사후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자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11의3 의 사후지급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직월부터 잔여분이 매월 지급됩니다.

Q. 사후지급분이 폐지되었는데 왜 회의자료에서 5,383,510원 미지급 지적이 나왔나요?

A. 사후지급분 폐지는 2025.1.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반 적용례이며, 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해서는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이 모든 휴직자를 신규 규정 대상으로 일괄 처리하면서 경과 규정 대상의 잔여분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Q. 2025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첫 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현행 §11의3 에 따라 일반 공무원은 월봉급액 100%이며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도 공무원)인 경우 §11의3 1호 가목에 따라 1·2개월째 상한이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으로 단계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2호에 따라 1~3개월째 300만원입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1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단계적 상한이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수당을 18개월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11의3 에 따라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일/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 5.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누락 시 약 480만원의 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 시행 2026.01.02 ### 제15조 지급 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산정 공식 >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시간당 단가 공식\*\*:  
봉급기준액 × (1/209) × 1.5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0.55, 일부 직급은 60%) ### 제15조 기준호봉 — 별표 12 >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 제15조 한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위임 >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정액분의 구체적 기준(월 10시간 등)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합니다( rule\_content 참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령

##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분기 ###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10시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핵심 — 시간외근무명령 없이도 매월 10시간 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주로 \*\*5급 이상 공무원\*\*(직급에 따른 결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항목 | 기준 | --- | --- | 정액분 한도 | 월 \*\*10시간\*\* (정액 지급) | | 추가 실적분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지급 | | 적용 직급 | 5급 이상 (지침이 정한 범위) | ###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47시간)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리고 산정(§15 ). 별도 정액은 없으며, 매월 한도 47시간 (단, §15 의 57시간 한도와 별개로 운영 시 한도 적용). | 항목 | 기준 | --- | --- | 정액분 | 없음 | | 실적분 한도 | 월 \*\*47시간\*\* (지침 운영 한도) | | 적용 직급 | 6급 이하 | ### 참고 — 두 분기 모두 §15 공식 적용 시간당 = 봉급기준액 × (1/209) × 1.5 - 봉급기준액: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또는 60%) -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월 1일 이상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 --- | --- | \*\*정년퇴직\*\* |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 | \*\*명예퇴직\*\* |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 | \*\*일반 의원면직\*\* | 일할 계산 (실제 근무 일수 비례) | | \*\*징계·당연퇴직\*\* | 정액분 미지급 | ### 일할 계산이 일반 원칙인 이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근수당 §7 와 동일한 일반 원칙이지만, \*\*정년·명예퇴직은 명예적 성격의 사유\*\*로 보아 퇴직월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10시간 전액을 지급하는 특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지침이 매년 갱신되므로, 학교 행정실은 시·도교육청 인사·재정과를 통해 매년 1월 지침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권장 - 퇴직 발령공문 (정년·명예 사유 명시)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당 연도판 (시도교육청 회람 인쇄본) - NEIS 시간외근무 승인기록·정액분 산정대상

### 실무 해설

## 1. 결론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정액분 적용 대상, 통상 5급 이상)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한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회의자료 — 477,070원 4명 누락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정년·명예퇴직자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일할 계산되어 약 \*\*477,070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일반 의원면직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 원인이며, 1인당 약 12만원의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은 퇴직 발령공문에서 \*\*퇴직 사유\*\*(정년/명예/의원면직)를 우선 확인하고, 정년·명예 케이스는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처리해야 합니다. 발령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 인사과에 사유 조회 후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 3.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을 1호(일반 실적분)와 2호(정액분 추가 지급 대상)로 분기합니다. 정액분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며,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직급 외 직무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6급 이하는 실적분만 적용되며 월 47시간 한도(지침 운영 기준) 내에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본 토픽의 퇴직월 특례는 \*\*정액분 적용 대상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6급 이하 실적분 대상자는 시간외근무명령이 있어야만 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4. 시간당 단가 공식 — 봉급기준액 × (1/209) × 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의 산정식: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별표 12) 봉급액 × 55% (또는 60%) - \*\*209\*\* :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5\*\* :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따라서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 . 정액분 10시간 = 시간당 단가 × 10 . 정년·명예퇴직 특례로 이 금액이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5. 감사 시 점검 포인트 — 부정 수령 5배 환수 주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와 1년 이내 근무명령 제한을 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정액분 부정 수령(예: 출근하지 않은 날의 정액분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교 행정실은 NEIS 출근부와 정액분 산정대장을 매월 교차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월 특례 처리 시 증빙은 \*\*퇴직 발령공문(사유 명시) + 시·도교육청 인사과 회신\*\* 2종을 반드시 보존하여 5년 이상 보관 — 감사 대비 핵심 자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하는 5급 공무원이 퇴직월에 5일만 근무했는데 시간외수당 정액분 얼마 받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위임에 따른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특례로, 정년퇴직자가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분 10시간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일할 계산 없이 시간당 단가(봉급기준액 × 1/209 × 1.5) × 10시간 전액입니다.

Q. 명예퇴직과 일반 의원면직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처리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명예퇴직은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되지만,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으로 처리됩니다. 발령공문에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6급 공무원도 퇴직월에 시간외수당 정액분 10시간 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정액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한 정액분 적용 직급(통상 5급 이상)에만 적용되며, 6급 이하는 실적분(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 퇴직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정년퇴직자가 퇴직월에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못합니다. 본 특례는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며, 1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예: 휴가 사용 후 즉시 퇴직)는 정액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 징수되며, 1년 범위에서 시간외근무명령이 제한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du-overtime-retirement-month>

## 6.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배우자·자녀별 지급액, 부양가족 인정 요건, 중복 수령 금지 규정 완벽 정리. 저출생 대응 자녀 수당 단계적 인상 내용 포함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공무원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 지급액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 매년 조정 가능)\*\* | 부양가족 구분 | 월 지급액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첫째) | 30,000원 | 자녀 (둘째) | 70,000원 | 자녀 (셋째 이후) | 110,000원 |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 20,000원 | ※ 위 금액은 최근 기준이며, 인사혁신처 예산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전 해당 연도 인사혁신처 지침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자녀 수당 상향: 저출생 대응을 위해 둘째·셋째 자녀 수당이 단계적으로 인상됨 ※ 장애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 시행령

## 부양가족 인정 요건 \*\*부양가족 인정 기본 요건\*\* 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것 2.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3.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자녀 연령 기준:\*\* - 만 19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3세까지 가능) -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부모 인정:\*\* - 직계존속(본인 부모 + 배우자 부모 모두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필요 \*\*중복 수령 금지\*\*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가족수당 수령 가능 -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수령 금지 - 타 기관(민간, 공공기관 등) 직원과 중복 불가

### 시행규칙

## 가족수당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 1. 부양가족 변동 발생 (출생·결혼·사망·분리 등) 2. 가족수당 청구서 작성 3.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인사부서 제출 및 확인 5. 당월 또는 익월 급여에 반영 \*\*변동 신고 기한\*\* | 변동 사항 | 신고 기한 |-----|-----| 출생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혼 | 혼인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분리 | 사유 발생 즉시 (과지급 방지) | 취업·소득 발생 | 소득 발생 다음 달까지 신고 |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가족수당은 월 얼마인가요?

A. 배우자는 월 40,000원입니다.

Q. 자녀 가족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A. 월 기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 이후 110,000원입니다.

Q. 부모 등 직계존속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요건 등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월 20,000원이 지급됩니다.

Q. 가족수당 금액은 고정인가요?

A. 위 금액은 최근 기준이며, 인사혁신처 예산·지침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근거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family-allowance>

## 7. 명절 휴가비

공무원 설날·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지급일, 지급액(봉급월액의 60%), 재직 기간 비례 지급 요건 완벽 정리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설날 및 추석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절 휴가비는 명절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 설날·추석 각 1회, \*\*봉급월액의 60%\*\* | 명절 | 기준일 | 지급 시기 | |-----|-----|-----| | 설날 | 설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설날 전월 | | 추석 | 추석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추석 전월 | \* 설날이 1월인 경우 → 12월 말일 기준 → 12월 지급 \* 추석이 9월인 경우 → 8월 말일 기준 → 8월 지급

### 시행령

## 명절 휴가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지급액 계산\*\* 명절 휴가비 =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60% 예시 (봉급월액 300만원인 경우): - 설날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추석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연간 합계: \*\*3,600,000원\*\* \*\*지급 제외 및 비례 지급\*\* | 상황 | 처리 방법 | |-----|-----| | 기준일(전월 말일) 재직 중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전에 퇴직한 경우 | 지급 제외 | |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 | 원칙 제외 (무급 휴직 등)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지급 가능 (유급 육아휴직) |

### 시행규칙

## 지급 관련 유의사항 \*\*명절 휴가비 지급 연도별 일반 일정\*\* | 구분 | 2025~2026년 예시 | |-----|-----| | 설날 | 1월 27~29일 (2025년 기준) → 12월 급여일 지급 | | 추석 | 10월 5~7일 (2025년 기준) → 9월 급여일 지급 | \* 실제 지급일은 소속 기관의 급여 일정에 따름 \*\*봉급이 변경된 경우\*\* - 기준일(전월 말일) 현재의 봉급월액 적용 - 기준일 이후 승진·호봉 승급이 있어도 기준일 당시 금액으로 계산 - 기준일 전에 승진한 경우 승진 후 봉급월액 적용 \*\*지방공무원 vs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일한 기준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휴가비는 얼마인가요?

A. 설날과 추석에 각각 봉급월액의 60%를 지급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봉급'만 계산 기준이 되며, 연 2회(설날·추석) 지급됩니다.

Q. 명절 휴가비는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명절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 2월이면 1월 31일이 기준일이 되어 1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Q. 기준일 전에 퇴직하거나 휴직 중이면 명절 휴가비를 받나요?

A. 기준일(전월 말일) 전에 퇴직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이면 전액 지급됩니다.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Q. 명절 휴가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며,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holiday-bonus>

## 8.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식과 월 57시간 한도, 평일 -1시간 산정 료, 부정 수령 5배 가산, 현업공무원 적용 차이, 퇴직월 특례 연계까지 실무 정리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분의 1\*\* × \*\*150%\*\*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원칙) - 단, 8급(상당)·9급(상당) 등 별표 13 일부 해당자는 \*\*60%\*\* 적용 - 기준호봉 = 같은 영 \*\*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 : -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 \*\*예외 3가지\*\* : 현업공무원등 (상시근무·토일정상근무) 재난·재해 발생 시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장 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 사유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 - 분( ) 단위까지 더한 후 월별로 합산, \*\*1시간 미만은 버림\*\* - \*\*공휴일·토요일\*\* :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 \*\*그대로\*\* - \*\*평일(가목 외의 날)\*\* :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의무 점심·휴식분) - \*\*1시간 미만일은 합산 X\*\* \*\*부정 수령 제재\*\* :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 \*\*1년 범위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 미발령\*\* + \*\*2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국가공무원 (지방과 사실상 동일) - 산식·상한·산정 방식·부정 수령 제재 동일 - \*\*지급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4호 해당자\*\*, 제7조 항 단서 해당자 - 기준호봉 = 별표 12 (지방은 별표 11) - 군인 중 소위·하사 : 근속가봉 3배·5배 가산 적용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제16조(야간)·제17조(휴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봉급표·기준호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제5조(현업공무원). 국가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제1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2조. 부정수령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

### 시행령

## 시간당 단가 계산 예시 (§15 항 산식 적용) \*\*산식\*\* :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1/209) × 1.5\*\* | 단계 | 계산 | |-----|-----| | 기준호봉 봉급액 | 별표 11(지방)/별표 12(국가)의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 | | × 비율 (55% or 60%) | | 기본은 0.55, 8급 이하 등 일부는 0.6 | | = 봉급기준액 | 이 값을 기준으로 모든 시간외·야간·휴일 산식 적용 | | × (1/209) |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환산 | | × 1.5 | | 50% 가산 (150%) | | 예시 : 봉급기준액 2,200,000원 → 시간당 = 2,200,000 × (1/209) × 1.5 ≈ \*\*15,790원\*\*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실적분 구분 (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 고시) §15 항 : 일반 공무원(현업공무원 외)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가능 — 행안부장관/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실무 운용 : - \*\*정액분\*\* : 월 10시간 정액 (퇴직·신규임용·휴직 등에 따라 15일 기준 일할) - \*\*실적분(초과분)\*\* : 정액 10시간 초과 근무분 (월 한도 57시간 = 10 정액 + 47 실적) - 5급 이상은 별도 처리 — 매년 인사혁신처·행안부 지침 확인 필수 ## 야간근무수당 (§16) — 현업공무원 한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업공무원등\*\*에게 지급 :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야간 교체(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분의 1\*\* × \*\*50%\*\* (1일 8시간 기준) ※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봉급기준액 사용. 단 가산율은 시간외는 150%, 야간은 50%로 차이. ## 휴일근무수당 (§17) — 현업공무원 한정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18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일당\*\* = 봉급기준액 × \*\*26분의 1\*\* × \*\*150%\*\* (1일 단위) ※ 시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 9시~18시 미만 근무는 별도 처리 (행안부장관·인사혁신처장 고시).

### 시행규칙

## 실무 운용 지침 — 시간외근무명령·산정·확인대상 \*\*시간외근무명령 절차\*\* 1. \*\*사전 명령\*\* — 부서장이 시간외근무명령 사전 결재. 사후 명령은 원칙적 금지(예외: 재난·긴급) 2. \*\*사유·시간 기재\*\* — 업무 사유, 시작·종료 시각, 예상 시간 명시 3. \*\*상한 점검\*\* —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사전 확인 4. \*\*실적 입력\*\* — e-사람·자체 시스템에 일자별 분 단위까지 기록 5. \*\*월별 산정\*\* — 평일 -1시간, 토·공휴일 그대로, 1시간 미만 일 합산 X, 월 합계 1시간 미만 절사 6. \*\*확인대상 비치\*\* — 부정수령 방지 (방과후·야간자율감독 등 별도 사업과 중복 금지) \*\*자주 발생하는 부정 수령 유형\*\* | 유형 | 사례 | |-----|-----| | \*\*중복 청구\*\* | 방과후수업 강사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동시 청구 | | \*\*확인대상 부실\*\* | 자율학습감독수당 확인대상 미비치·서명 누락 | | \*\*정액분 일할 누락\*\* | 신규임용·퇴직·휴직 시 15일 기준 일할 미적용 → 정액분 과지급 | | \*\*사후 명령\*\* | 근무 후 사후에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절차 위반 | | \*\*평일 1시간 미공제\*\* | §15 항 2호 나목 — 평일은 1시간 빼야 함 | | \*\*무허가 출장 후 정산\*\* | 출장 + 시간외 중복 인정 — 출장기간 시간외 미인정 | | \*\*부정 수령 시 제재 (§15 )\*\* - \*\*5배 가산 징수\*\* :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징수 - \*\*1년 범위 근무명령 미발령\*\* : 적발 횟수에 따라 1년 이내 시간외근무명령 자체 미발령 - \*\*2회 이상 적발\*\* : 관할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의무\*\* - 야간(§16)·휴일(§17)도 §15 항 \*\*준용\*\* — 같은 5배 가산·근무명령 미발령·징계의결 요구 \*\*퇴직월·신규임용월 특례\*\* — 별도 토픽 연계\*\* 정년·명예퇴직 시 1일+ 근무한 경우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등 특례는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토픽( edu-overtime-retirement-month ) 참조.

##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봉급기준액 × (1/209) × 150% 산식으로 계산합니다(수당규정 제15조제2항).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일반) 또는 60%(8급 이하 일부)입니다.

Q. 시간외근무는 월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A.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이 한도입니다. 현업공무원, 재난·재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한도 초과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Q. 평일에 1시간 더 일하면 시간외로 인정되나요?

A. 평일은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이 인정됩니다(수당규정 제15조제5항). 따라서 평일 1시간 초과근무는 공제 후 0시간이 됩니다. 토요일·공휴일은 공제 없이 시간 그대로 인정됩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며, 1년 범위에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지 못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수당규정 제15조제8항).

출처: <https://silmu.kr/topics/overtime-allowance>

## 9. 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S·A·B)과 지급률, 지급 시기, 산정 방법 완벽 정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와 실무 유의사항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률

## 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체계: 공무원보수법 제47조(법률)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에서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을 정함 → 구체적인 등급별 지급률·평가 방법·등급 분포 비율 등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행정규칙)에서 매년 정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동등 조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지침」. 국가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에 관한 규정).

### 시행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계산 공식\*\* 성과상여금 = 평가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지급률 예시 (봉급월액 300만원,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 지급률 적용 시): - S 등급:  $3,000,000 \times 172.5\% = **5,175,000원**$  - A 등급:  $3,000,000 \times 125.0\% = **3,750,000원**$  - B 등급:  $3,000,000 \times 85.0\% = **2,550,000원**$  ※ 위 지급률(S 172.5%, A 125.0%, B 85.0%)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평가 기간\*\*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에 지급합니다. - 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등급 분포 비율 준수 의무\*\* - 기관별로 S:A:B 등급 비율을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함 (예: 30:40:30) -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등급 비율 조정 금지 - 예외: 소규모 기관(5명 미만)은 탄력적 적용 가능 - ※ 등급 분포 비율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하세요.

### 시행규칙

## 지급 제외·조정 사유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지급 제외 대상\*\* -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직위해제 중인 자 -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자 \*\*감액 지급 대상\*\* - 평가 기간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자 - 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부족한 자 (비례 지급) \*\*비례 지급 (재직 기간 비례)\*\* | 재직 기간 | 지급률 조정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전액의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전액의 25% | 3개월 미만 | 지급 없음 |

###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성과상여금 = 평가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등급별 지급률로 계산하며,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S·A·B 등급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별 지급률과 등급 분포 비율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매년 정하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규 임용 첫해나 휴직 기간에도 성과상여금을 받나요?

A. 평가 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면 전액의 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면 25%를 비례 지급하고, 3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실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기관장이 S·A·B 등급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등급 분포 비율은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비율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대상입니다(소규모 기관은 지침상 탄력 적용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

Q. B등급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A. 성과상여금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B등급 자체가 인사기록에 불이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2년 연속 B등급 등 특별 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과상여금은 퇴직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erformance-bonus>

## 10.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요건, 재직 기간별 지급률, 계산 공식 완벽 정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차이, 연금법 적용 제외자의 일시금 처리까지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률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제62조제1항).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파면의 경우 2분의 1 감액 지급(해임 이하는 전액 지급) \*\*퇴직수당 산정 방식\*\*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의 계산식(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산출합니다.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 지급비율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구간별 비율(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부터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까지)입니다. - 산정 기준은 봉급월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공무원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구체적 지급비율과 계산식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소속 기관 인사·급여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 퇴직수당 산정 구조 \*\*계산 구조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 →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 -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연도 공무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공단 고시됩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산정 방법\*\* -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 -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포함(단, 무급 휴직·징계에 의한 정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군 복무 기간: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합산 가능 - 1년 미만 잔여 월수는 일할(월할) 계산 적용 ※ 정확한 지급비율표·계산식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시행규칙

## 퇴직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지급 제외·감액 사유\*\* | 퇴직 사유 | 지급 여부 | |-----|-----| | 의원면직(자진퇴직) | 전액 지급 | | 정년퇴직 | 전액 지급 | | 해임 | 전액 지급 | | 파면 | 1/2 감액 지급 | | 재직 1년 미만 퇴직 | 지급 없음 | \*\*퇴직수당 vs 퇴직급여(연금) 비교\*\* | 구분 | 퇴직수당 | 퇴직급여(연금) | |-----|-----|-----| | 근거 | 퇴직수당 규정 | 공무원연금법 | | 재원 | 국가·지자체 부담 | 공무원연금공단 |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지급 시기 | 퇴직 즉시 | 퇴직 후 신청 |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퇴직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별도 급여체계(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로 퇴직 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퇴직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A.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또는 사망)할 때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인사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 파면·해임 시에도 퇴직수당을 받나요?

A. 해임 이하의 처분은 퇴직수당이 전액 지급되지만, 파면의 경우 2분의 1이 감액 지급됩니다. 다만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퇴직수당을 소급 지급합니다.

Q. 명예퇴직하면 퇴직수당 외에 추가로 받는 게 있나요?

A. 명예퇴직수당(명예퇴금)은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되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retirement-allowance>

# 11.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기본 포인트·근속 포인트·가족 포인트 구성, 사용처, 미사용 포인트 처리 방법 완벽 정리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후생제도)\*\*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후생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52조(후생제도)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제27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대상, 복지포인트 배정·사용,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서울·경기 등 광역 및 시·군·구별 별도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매년 갱신.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제27조.

## 시행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조 (복지포인트의 배정)\*\*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항목: 단체보험료 등 필수 복지에 사용 (기관별 설정) - 자율 항목: 공무원 개인이 선택하여 사용 - 지급 시기: 매년 1월 1일 기준 연간 포인트 일괄 배정 - 사용 기간: 지급 연도 내 (12월 31일까지) - 미사용 포인트: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 (소멸) \*\*복지포인트 구성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차이 있음)\*\*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본 포인트 | 전 직원 동일 배정 (기관별 상이) | 기관 예산 범위 내 결정 | | 근속 포인트 | 재직 연수에 따라 가산 | 기관별 기준 상이 | | 가족 포인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 | 인사기록상 부양가족 기준 | \*\*제25조 (복지포인트의 사용) / 제26조 (복지포인트의 전환 금지 등)\*\* | 분야 | 주요 사용처 | |----|-----|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의료비, 안경·렌즈, 치과 치료 | | 자기계발 | 여학·자격증 강의, 도서 구입, 온라인 강좌 | | 여가·문화 | 여행, 공연·전시 관람, 스포츠 시설 | | 가족친화 | 탁아·보육비, 가족여행, 자녀 교육비 | | 생활지원 | 식료품, 생활용품 (기관별 허용 범위 상이) | -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 지정된 사용처 외 사용 불가 \*\*복지포인트 사용 시스템\*\* - 복후넷(www.bokhoonet.go.kr): 온라인 쇼핑몰 방식 - 복지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 영수증 제출 후 환급 방식 (기관별 운영)

## 시행규칙

## 복지포인트 지급·사용 유의사항 \*\*신규 임용자 포인트 지급\*\* - 1월 1일 이후 임용: 잔여 월수 비례 지급 - 예: 7월 1일 임용 → 1/2 포인트 지급 (하반기 6개월 기준) \*\*퇴직·휴직 시 처리\*\* | 상황 | 처리 방법 | |----|-----| | 중도 퇴직 | 사용 가능 기간(퇴직일)까지 사용 후 미사용분 환수 없음 | | 휴직 중 | 포인트 지급 (사용은 가능하나 기관별 차이 있음) | | 파견 중 | 소속 기관 기준 유지 | \*\*기관별 운영지침 주요 사항\*\* -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은 연 1회 이상 정산·확인 (감사 대비) - 부정 사용(현금 전환, 허위 영수증 등) 적발 시 환수 및 징계 조치 - 기관별로 사용 가능 항목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운영계획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정된 사용처(복지몰·복지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6조). 부정 사용 시 징계와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Q. 연말까지 다 못 쓴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간 배정되며 그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일부 기관은 제한적 이월을 허용하므로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Q. 복지포인트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건강·의료(건강검진·의료비·안경 등), 자기계발(도서·학원·온라인 강의), 여가·문화(여행·공연·스포츠), 가족친화(보육비·자녀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담배, 사행성 물품, 현금화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기관별 허용 범위 상이).

Q. 신규 임용 첫해에는 복지포인트를 전액 받나요?

A. 1월 1일 기준 재직자가 전액을 받고, 이후 임용자는 잔여 월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임용되면 연간 포인트의 약 50%를 받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welfare-point>

## 12. 연말정산

공무원 연말정산 절차와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법령 기준일: 2026.06.04

### 법률

## 연말정산 제도 법적 근거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부족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 법령 체계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4조~제144조에서 규정하며, 공제 항목과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세히 정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제144조,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4년 귀속) ### 1.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항목 | 공제율 | |-----|-----|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 15% (한도 없음) | | 일반 부양가족 | 15% | \*\*변경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폐지\*\* ### 2.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 대상 추가 ### 3.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수 | 기준 | 변경 | |-----|-----|-----| | 1명 | 15만원 | 15만원 | | 2명 | 30만원 | 35만원 | | 3명 이상 | 30만원 + 추가 | 35만원 + 추가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 4.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2026)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한정 ###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기준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확대 ### 6. 주택청약저축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7.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기준: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시행규칙

## 소득세법 관련 조문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 공제 증명서류 제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해당 공제 항목별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과세관청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 증명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법 제140조·국세청 간소화) \*\*의료비 공제 대상 증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대체 가능) 2. 약국 발행 의약품 구입 영수증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증빙 서류 4.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연 5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7조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 \*\*제107조 (교육비 공제 대상 증명)\*\*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교육기관 발행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교육비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는 카드 결제 내역 또는 입금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주택 관련 공제 증명서류 (소득세법 제140조·국세청 간소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 발행 상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입신고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공제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 혼동 → 세액 계산 오류 증빙서류 미징구 → 공제 불인정 부양가족 중복 공제 → 추징 대상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신뢰 → 누락·오류 발생 실무 적용 포인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1년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흐름: 공제 자료 수집 (간소화 서비스, 증빙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소속 기관 제출 소득세 재계산 → 환급 또는 추가 징수 주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중요 체크 포인트: • 부양가족 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의료비: 연간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참고용이며, 모든 자료가 자동 수집되지 않음 • 의료비·교육비 중 일부는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료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소득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또는 소속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부양가족 소득 요건 미확인으로 공제 불인정 → 추징" • "증빙서류 미제출로 공제 탈락" • "간소화 자료 누락으로 공제 못 받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소속 기관 총무·인사 부서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변경사항은?

A.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 적용됩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며, 초혼·재혼 무관하게 \*\*생애 1회\*\* 적용됩니다.

Q.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2024년 귀속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요건(나이, 소득 등)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 관계는?

A.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025년 지출 의료비에 대해 2026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5년 의료비에서 차감 후 신고해야 합니다.

Q.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 \*\*네, 2024년 귀속분부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year-end-settlement>